

울산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9나132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정재삼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상

변론 종결 2020. 7. 9.

판결 선고 2020. 8. 27.

제 1 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단2456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9행부터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원고와 피고는 2018. 1.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후 각 서명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9,5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 대한 위 가압류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해주었다.

H, I 합의금 95,000,000원('95,000,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95,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오늘 드립니다.

가압류 C 해제건을 책임지고 해제해줍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G에게 지급한 합의금 1억 9,0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그 중 절반인 9,5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받으면서 피고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해주었는데 피고로부터 나머지 9,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합의금 중 9,500만 원만을 지급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해주기로 합의하였을 뿐 피고가 1억 9,000만 원 전부를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다고 다룬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1억 9,0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행각서(갑 제2호증) 제4항의 특약사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하자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1억 9,000만 원 지급 약정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9,500만 원 외에 나머지 9,500만 원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 피고가 2018. 1. 22. 원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 작성된 합의서(을제1호증) 표현상으로도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9,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위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9,500만 원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일부만을 해제해주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기재가 포함된 다른 문구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나머지 9,500만 원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기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행각서에 '4. 특약사항'으로 "토지소유자 E등의 부동산을 대리인 피고가 이전서류일체를 준비해서 소유권을 매수인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매도인인 E 등의 대리인으로서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위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직접 하자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무 를 부담한 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채무자인 E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접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진, 판사 신형철, 판사 안복열